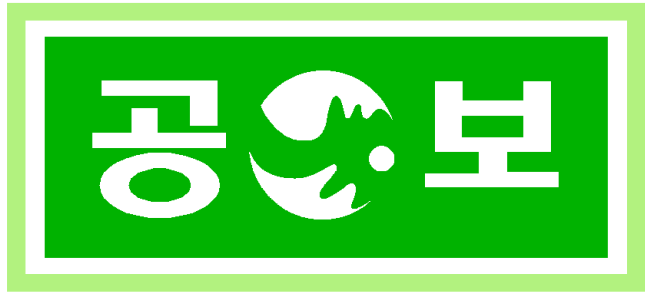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41 호 2013. 9. 16(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6호[도로명주소 고시].....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57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98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40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56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이화2길 16(중산동)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제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증정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증산동 531-2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2길 16(중신동)	2013-09-16	기존 지면마을인 이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90-1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0(호계동)	2013-09-16	기존 횡단길이 추성평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동대리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대인동 566	울산광역시 북구 대인4길 64(대인동)	2013-09-16	예전 지명인 대인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4-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9길 16(연암동)	2013-09-16	고려 중절왕때 이곳 바위에서 성스리운 흰 연꽃이 수놓은 듯 피어나 백연암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게 됨. 현재도 별칭동명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84-9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9길 18(연암동)	2013-09-16	고려 중절왕때 이곳 바위에서 성스리운 흰 연꽃이 수놓은 듯 피어나 백연암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게 됨. 현재도 별칭동명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6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608-1	울산광역시 북구 담곡1길 134(무룡동)	2013-09-16	예전 지명인 담곡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1-16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영로 27-1(호계동)	2013-09-16	동대산 인근에 중앙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9-17	
8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799-11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2길 16(송정동)	2013-09-16	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지역성을 흰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9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649	울산광역시 북구 담곡1길 84-5(무룡동)	2013-09-16	예전 지명인 담곡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10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52-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15길 43(화봉동)	2013-09-16	화봉은 화봉의 옛지명이며 산세가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한 마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0-04-27	
1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45-23, 345-24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3-8(연암동)	2013-09-16	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현재도 두부곡마을이 존재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관린지번 추가
12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1150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40(진곡동)	2013-09-16	관문성으로 가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번조정
13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396-5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719(영포동)	2013-09-16	영포항 개항지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조정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156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8-1(정자동)	2013-09-16	행정구역인 정자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지번조정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15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방어진순환도로 1399외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9.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방어진순환도로 1399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992-5	2013-09-16	건축물 대장 말소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430-1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6-7	2013-09-16	건축물 대장 말소	
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430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86-25	2013-09-16	건물 멸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3 - 798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3.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방법 : 경쟁방법
2. 금 고 수 : 단수금고(1개)
3. 약정기간 : 3년 (2014. 1. 1 ~ 2016.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제2조·제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중 우리구 관내 영업점 (지점, 출장소)을 둔 금융기관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0%)
 -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붙임
6. 신청 절차

가. 관련서류 열람

- 열람기간 : 2013. 9. 30(월) ~ 10. 4(금) - 5일간
- 열람장소 : 세무과 (1층 민원실)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0. 4(월) - 10. 8(화) - 3일간
- 접수장소 : 세무과 (1층 민원실)
- 제출부수 : 12부 (원본 1, 사본 11)
- 제출서류 : 구 금고지정신청서 및 지정신청안내서에 의한 지정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7. 심사 방법

- 우리구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함
- 서류심사 (단,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 ※ 면접심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임
- 금고별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를 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정함

8. 금고의 주요 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구 소유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 금고로 지정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신청시 제안한 금고 협력사업 등 제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행담보 조건 등을 약정시 명시
-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앞으로 금고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

- 신청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채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1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0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 (5점) ※ 협력사업 추진계획 3점, 실적 2점 부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구 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 을 고려 하여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점.	10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부항목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내로 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 BIS 10퍼센트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가능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협력사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8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안 제21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추가
-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21조 별표 1)

구 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다. 보상금 신청요건(안 제21조 별표 1)

-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 보상 제외대상
 -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보상금 신청 접수
 - 접수일시 : 주 1회(화요일)
 -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지참물 : 신분증(주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 접수 후 7일 이내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규정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41-8032 팩스 : 241-8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공포일 기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제21조 관련)

I.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구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II.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2. 보상대상 : 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3. 보상 제외대상
 - 가.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나.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다.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 라.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마.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4. 보상금 신청 접수
 - 가. 접수일시 : 주 1회(화요일)
 -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 나.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다. 지참물 : 신분증(주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5.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 접수 후 7일 이내

고시공고 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3-09-13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박광희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0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04호</p> <p>「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9월 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p> <p>1. 개정이유 가.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어 있는 불법 유통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통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 가. 안 제21조(불법유통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추가 •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통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21조 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보상금</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규 격</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현수막</td>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 5㎡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면적 5㎡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원/장</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벽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크기 30cm x 40c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원/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크기 30cm x 40cm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원/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홍보전단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크기 10cm x 6cm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명함식전단지</td> <td style="text-align: center;">크기 10cm x 6cm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원/장</td> </tr> </tbody> </table> <p>※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p>				구 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구 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내용

다. 보상금 신청요건(안 제21조 별표 1)

- 수거대상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지역
- 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홍보전단지·명함식전단지
- 보상 제외대상
 - 구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 옥외에 살포되지 않은 홍보전단지·명함식 전단지
 - 행정용·선거용·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보상금 신청 접수
 - 접수일시 : 주 1회(화요일)
 - ▷ 공휴일인 경우 익일 순연
 -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지참물 : 신분증(주민 확인용), 은행 계좌번호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에 의거 신청인 은행계좌 지급
 - ▷ 접수 후 7일 이내

3.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규정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41-8032 팩스 : 241-80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